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안이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 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하고,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의 4. 개별 기준 중 위반행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같은 법 제175조제6항제6호 및 제6호의2에 따라 구분하여 추가(안 별표 35)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5 제4호 추목 중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로 하고, 같은 호 쿠목부터 규목까지를 각각 투목부터 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쿠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추. 법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6호		100	200	300
쿠. 법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6호의2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건설공사도급인이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부 칙

이 영은 '22.8.18.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8809